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5

제출년월일 : 2000. // .

제 출 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게 조례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목적·사육제한의 범위등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6조)
- 나. 가축사육허가신청시 구미서류중 주민등록표를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다. 규제완화차원에서 가축사육허가 신청 받은자의 허가증 게시의무를 삭제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개선함(안 제5조제3항 및 제7조)
- 라. 가축사육허가 신청의 처리기간을 “7일”로 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관련법령(발췌) 1부.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4조”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로 하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향상”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한다.

제2조중 “축산법제2조”를 “법제2조”로 한다.

제4조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를 “법 제3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육지 위치도”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되, 동조 제2항중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을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관할보건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6조중 “보건위생”을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시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축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중 허가기간을 “7일”로 하고, 구비서류중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정결히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p>
<p>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법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 법 제2조----- -----</p>
<p>제4조(사육금지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4조(사육금지조치) ----- ----- 법 제34조----- -----</p>
<p>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읍·면지역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2. 사육지 위치도 ②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한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 -----사육지 위치도----- ----- <삭 제> <삭 제> ②-----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 전----- 보건소장-----</p>

현행	개정안
<p>③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p>
<p>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제6조(사육자의 의무) ----- ----- -----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 -----</p>
<p>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②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이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시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축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현										개																					
행										정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7일													
사용자		주소		주민등록				사용자		주소		주민등록				사용자		주소		주민등록											
성명		(한자)		번호				성명		(한자)		번호				성명		(한자)		번호											
사용장 소재지				사용기간				19		사용장 소재지				사용기간				19													
								19																							
축사및		구분		축사				사육두수		축사및		구분		축사				사육두수													
가축사		축종		부지		동수		건평		성축		자축		계		가축사		축종		부지		동수		건평		성축		자축		계	
육두수		면적														육두수		면적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의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										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합니다.										신청합니다.																					
19										년																					
월										년																					
일										월																					
일										일																					
사용자										사용자																					
①										①																					
영주시장 귀하										영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용자의 주민등록표 1부								구비서류		: 사용자의 원지토 1부																			
		2. 사육지의 원지토 1부																													

관 련 법 령 (발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0.<생 략>

11. "가축"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34조(가축사육의 제한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가축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사육동물) 법 제2조제1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젓소·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

【민원사무 기준표】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 처리기간 7일

의안검토보고서

1. 의안

- 의안번호 : 제165호
- 의안명 :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

2. 제안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게 조례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목적·사육제한의 범위 등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2항 및 제6조)
- 나. 가축사육허가신청시 구비서류중 주민등록표를 삭제함.
(안 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다. 규제완화차원에서 가축사육허가 신청받은 자의 허가증 게시의무를 삭제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규정을 개선함. (안 제5조 제3항 및 제7조)
- 라. 가축사육허가 신청의 처리기간을 “7일”로 함. (안 【별지 제1호서식】)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99. 2. 8)에 부합하도록 목적(안 제1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안 제2조) 등을 정비하고,
- 안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의해 7일로 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 시달된 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2000. 4. 3.)에 의거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절차 등을 간소화하고(안 제5조),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을 개선(안 제7조)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2000. 12.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호 섭